#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06 발의연월일: 2025. 1. 22.

발 의 자: 김주영·박 정·허성무

정태호 · 백승아 · 복기왕

문정복 · 김태선 · 이학영

박홍배 • 이용우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 '2023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1.5년으로 현행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인 1년보다 긴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구직자 취업활동을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아울러 구직기간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월 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구직촉진 수당 지급 수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구직

촉진수당을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직촉 진수당의 지급수준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적극적인 구 직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 법률 제 호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고용정책심의회"를 "매년 고용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전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른 1인 가구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이 되도록 결 정되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지급수준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 1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지원을 신 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제15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① 수급자가 취업지	사후관리) ①
원서비스 중 제12조부터 제14	
조까지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하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라 한	
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	
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	
부터 <u>1년</u> 이 되는 날까지로 한	<u>2년</u>
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지급수준 결정) ① 고용노	제19조(지급수준 결정) ①
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직촉진수당의	<u> </u>
지급액을 결정한다. <후단 신	
<u>설&gt;</u>	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전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6조에 따른 1인 가구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
	이 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